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268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중 소 기 업 청 장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공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977호, 2013. 12. 1

2. 공포·시행)됨에 따라,

총전 별정직공무원 중 2명을 일반직공무원(임기제 4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으로 하고, 기능직공무원 159명(기능7급 2명, 기능8급 2명, 기능9급 155명)을 일반직공무원 159명(7급 2명, 8급 2명, 9급 155명)으로 하며,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원되는 인력 1명의 직급(4·5급 1명)을 정하고, 국정과제·협업과제 추진 등을 위하여 감축되는 인력 8명의 직급별 정원(5급 2명, 6급 3명, 8급 1명, 9급 2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중소기업청 하부조직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11. 11. ~ 11.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4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을 “임기제 서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5호 중 “기관평가”를 “평가 및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6항제5호 중 “고객관리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지식관리시스템”을 “지식관리 정보망”으로 한다.

7.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제8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원시책의 수립·추진”을 “지원계획의 수립”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근로자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을 “근로자의 연수·지도 및 경영컨설팅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의2 및 제1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상공인진흥계정의 관리·운영

6의2. 소상공인연합회의 지도·감독

6의3. 소상공인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16의2. 장애인창업자 및 장애인창업지원사업자에 대한 지원

16의3.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지원

1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관리·감독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운영 및 감독
3. 체인사업자의 육성
4. 소상공인의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
5. 소상공인의 업종별 점포모델의 개발·보급
6.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화 및 경영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8. 소규모 점포시설의 개선 지원
9. 도·소매업 소상공인 유통체계 혁신 지원
10.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 지원
11. 소상공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12. 우수점포 발굴·지원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3.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14. 소상공인 신사업 아이디어 개발 및 보급
1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제5항제2호 중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을 “전통시장 및 상점

가 활성화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현대화 및 환경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을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1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제9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 지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창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제도의 운영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운용

3.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4. 창업정보의 제공·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및 창업 관련 통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5. 법인 설립 관련 온라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6. 창업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7. 기업가정신 함양 등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8. 청소년 및 대학생 등 청년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대학 내 창업지원전담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예비 기술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1. 교수·연구원 등 전문인력의 창업촉진에 관한 사항
12. 퇴직인력 및 중장년층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3. 대학·연구기관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4.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의 지원 및 관리
15. 해외 창업정책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창업 관련 대학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지원,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18. 시제품제작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창업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0.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사항
21.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육성,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3. 실험실 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국내외 창업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⑥ 지식서비스창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식서비스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운용
9. 1인 창조기업 동향 분석 및 실태조사
10.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1인 창조기업 교육에 관한 사항
12.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3. 중소기업 진단·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4. 중소기업 지도인력의 육성·관리
15.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의 지원
1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관리
17. 중소기업 컨설팅 대학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지식서비스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제3항제31호 중 “공동물류시설의 건립”을 “물류현대화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0호 중 “설립·운영”을 “설립·운영 및 관리·감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2호 중 “산학연계 맞춤형”을 “산학연계”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지원”을 “기술사관육성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지원”을 “특성화고등학교 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관리·운영”을 “운영·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수출기

업화 지원”을 “수출역량 강화”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중소기업의 국방 질충교역 대상 품목 추천에 관한 사항
제13조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산업체·인력공급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을 “중소기업·학교·유관기관 간 인력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6. 특성화고등학교 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

17. 기술사관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9.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일반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채용 박람회 개최 등 취업연계 활동에 관한 사항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소기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화담당관,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및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의 공공판로지원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19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 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5급 2명, 6급 3명, 8급 1명, 9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별표 2]

중소기업청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345
정무직 계	1
청장	1
별정직 계	3
고위공무원단(차장)	1
비서(7급상당)	1
비서(9급상당)	1
일반직 계	341
고위공무원단	7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7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4
임기제 서기관(비상안전담당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6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9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3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
행정사무관	28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5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26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7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3
행정주사	22
행정주사 · 공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44
사서주사	1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6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5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
행정주사보	5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7
행정서기 또는 공업서기	14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6
운전서기보	3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13
전문경력관 나군(비상안전 담당)	1

[별표 3]

중소기업청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344
정무직 계	1
청장	1
별정직 계	3
고위공무원단(차장)	1
비서(7급상당)	1
비서(9급상당)	1
일반직 계	340
고위공무원단	7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7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4
임기제 서기관(비상안전담당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6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9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3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
행정사무관	28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0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27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7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3
행정주사	23
행정주사 · 공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38
사서주사	1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6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6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
행정주사보	4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5
행정서기 또는 공업서기	14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6
운전서기	1
운전서기보	2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주사보	2
사무운영서기	1
사무운영서기보	10
전문경력관 나군(비상안전 담당)	1

[별표 4]

지방중소기업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관련)

총계	409
일반직 계	40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5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5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	8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6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21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0
행정주사	20
행정주사·공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30
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92
행정주사보	10
행정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6
공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19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17
행정서기 또는 공업서기	23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11
방호서기보	7
운전서기보	11

공업연구원	21
공업연구소	20
전기운영서기보	1
기계운영서기보	9
열관리운영서기보	9
화공운영서기보	2
사무운영서기보	14

[별표 5]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2항 관련)

총계	481
교육공무원 계	348
교장	3
교감	5
교사	340
일반직 계	133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시설주사 또는 사서주사	15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3
행정서기 · 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16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8
방호서기보	12
간호조무서기보	1
운전서기보	3
위생서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28
전기운영주사보	1
기계운영주사보	1
전기운영서기	1
열관리운영서기	1

건축운영서기보	5
전기운영서기보	3
기계운영서기보	10
열관리운영서기보	1
농림운영서기보	4
사무운영서기보	17

⑥ 고객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1. ~ 4. (생략)
- 5. 고객관리를 위한 제도의 운영 및 고객관리 지원
- 6. (생략)
- 7.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 운영
- 8. 삭제
- 9. · 10. (생략)
- 11. 청내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 12. ~ 17. (생략)

⑦ (생략)

제8조(소상공인정책국) ①·② (생략)

③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 4. (생략)
- 5.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운영·지원
- 6. 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신설>

⑥ -----

-----,

- 1. ~ 4. (현행과 같음)
- 5. -----
----- 지원
- 6. (현행과 같음)
- 7.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 9. · 10. (현행과 같음)
- 11. ----- 지식관리정보망-----

- 12. ~ 17.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소상공인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4. (현행과 같음)
- 5. 소상공인진흥계정의 관리·운영
- 6. ----- 지원계획의 수립

6의2. 소상공인연합회의 지도·

<신 설>

7. ~ 15. (생 략)

16.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신 설>

<신 설>

17. ~ 18. (생 략)

19.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관
한 사항

20. ~ 32. (생 략)

④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의 지원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의 운영

3. 체인사업자의 육성

4. 삭 제

5. 소상공인의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

감독

6의3. 소상공인 간 네트워크 구
축 지원

7. ~ 15. (현행과 같음)

16. -----
근로자의 연수·지도 및 경영
컨설팅 지원

16의2. 장애인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지원사업자에 대한 지원

16의3.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의 설치·운영 지원

17. ~ 18. (현행과 같음)

19.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관
리·감독

20. ~ 32. (현행과 같음)

④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의 지
원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의 운영 및 감독

3. 체인사업자의 육성

4. 소상공인의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

5. 소상공인의 업종별 점포모델

6. 소상공인의 업종별 점포모델의 개발·보급
 7. 소상공인 창업프로그램의 운영
 8. 삭 제
 9.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0. 소규모 점포시설의 개선 지원
 11. 도·소매업 소상공인 유통체계 혁신 지원
 12.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
 13. 소상공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14. 우수점포 발굴·지원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5. 자영업 컨설팅 지원
 16. 중소 도·소매업 단체에 관한 사항
 17. 신사업 아이디어 및 모형의 개발·보급
 18.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⑤ 시장상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의 개발·보급
6.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화 및 경영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8. 소규모 점포시설의 개선 지원
 9. 도·소매업 소상공인 유통체계 혁신 지원
 10.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 지원
 11. 소상공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12. 우수점포 발굴·지원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3.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14. 소상공인 신사업 아이디어 개발 및 보급
 1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⑤ -----
-----.

1. (생략)
2.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3.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환경개선계획의 수립·시행
4. ~ 5. (생략)
6. 시장경영진흥원의 운영·지원
7. ~ 16. (생략)
17. 지역상권의 특성화 및 개발 지원

<신설>

<신설>

⑥ 삭제

제9조(창업벤처국) ①·② (생략)

③ 벤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신설>

1. (현행과 같음)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3. -----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 지원
4. ~ 5. (현행과 같음)
- <삭제>
7. ~ 16. (현행과 같음)
17.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1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제9조(창업벤처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 지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

9. ~ 11. (생략)

④ (생략)

⑤ 창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제도의 운영

2.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사항

3.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의 운영

4.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의 지원 및 관리

5. 삭제

6. 창업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7.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지원,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창업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 창업 관련 통계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육성

항

9. ~ 11.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창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제도의 운영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운용

3.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4. 창업정보의 제공·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및 창업 관련 통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5. 법인 설립 관련 온라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6. 창업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7. 기업가정신 함양 등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8. 청소년 및 대학생 등 청년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대학 내 창업지원전담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예비 기술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연구개발기업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교수·연구원 등 전문인력의 창업촉진에 관한 사항
13. 퇴직인력 및 예비 기술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4. 청소년 및 대학생 등 청년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창업 관련 대학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6. 기업가정신 함양 등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운용
18. 창업정보의 제공·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19.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 지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0.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육성,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1. 중소기업 설립 관련 온라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교수·연구원 등 전문인력의 창업촉진에 관한 사항
12. 퇴직인력 및 중장년층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13. 대학·연구기관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4.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의 지원 및 관리
15. 해외 창업정책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창업 관련 대학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지원,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18. 시제품제작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창업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0.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사항
21.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육성,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3. 실험실 공장 설치 및 운영에

⑥ 지식서비스창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온라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식서비스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식서비스업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6. 1인 창조기업 동향 분석 및 실태조사
7.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1인 창조기업 교육에 관한 사항
9. 1인 창조기업 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 및 대학생 등의 1인 창조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

24. 국내외 창업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⑥ 지식서비스창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식서비스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운용
9. 1인 창조기업 동향 분석 및 실태조사
10.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운용

11. 중장년층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 진단·지도에 관
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3. 중소기업 지도인력의 육성
·관리

14.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의 지원

15.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의 관리

16. 중소기업 컨설팅 대학원 지
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지식서비스 중소기
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경영판로국) ①·② (생
략)

③ 공공구매판로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30. (생 략)

31. 중소기업 공동물류시설의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

32. ~ 44. (생 략)

11. 1인 창조기업 교육에 관한
사항

12.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
원에 관한 사항

13. 중소기업 진단·지도에 관
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4. 중소기업 지도인력의 육성
·관리

15.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의 지원

1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의 관리

17. 중소기업 컨설팅 대학원 지
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지식서비스 중소기
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경영판로국)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

1. ~ 30. (현행과 같음)

31. ----- 물류현대화사업

32. ~ 44. (현행과 같음)

④ 기업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10.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1. ~ 18. (생략)

⑤ 인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12.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13.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14.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15. ~ 16. (생략)

17.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8. ~ 20. (생략)

⑥ 해외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④ -----
-----.

1. ~ 9. (현행과 같음)

10. ----- 설립·운영 및 관리·감독-----

11. ~ 18. (현행과 같음)

⑤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산학연계 -----

13. 기술사관육성사업-----

14. 특성화고등학교 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

15. ~ 16. (현행과 같음)

17. -----

----- 운영·지원-----

18. ~ 20. (현행과 같음)

⑥ -----
-----.

1. ~ 3. (현행과 같음)

4.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에 관한 사항

5. ~ 14. (생략)

<신설>

15. ~ 21. (생략)

제13조(지방중소기업청) ① ~ ③
(생략)

④ 공공판로지원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14. (생략)

15. 중소기업 체험사업의 지원
에 관한 사항

16. 기업과 공업고등학교 간 연
계 인력양성사업의 지원에 관
한 사항

17.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운
영 실태조사 및 사업 성과평
가에 관한 사항

18. 지역 산업체·인력공급 기
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
워크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9.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졸
업생과 지역 중소기업 간 채

4. ----- 수출역량 강화-----

5. ~ 14. (현행과 같음)

14의2. 중소기업의 국방 절충교
역 대상 품목 추천에 관한 사
항

15. ~ 21. (현행과 같음)

제13조(지방중소기업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14. (현행과 같음)

15.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 지
원에 관한 사항

16. 특성화고등학교 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

17. 기술사관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8. ----- 중소기업·학교·유
관기관 간 인력지원-----

19.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일반 미취업자 등을

용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20. ~ 24. (생략)

⑤ ~ ⑦ (생략)

제15조(중소기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중소기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3급·4급 또는 5급 1명), 규제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회계·결산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또는 6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대상으로 채용 박람회 개최 등 취업연계 활동에 관한 사항

20. ~ 24.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중소기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임기제공무원-----
-----,

③ -----

3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 설>

----- 임기제공무원-----
-----,

④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화담당관,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및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의 공공판로지원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